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규정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(안 별표2. 2. 개정).

3. 주요내용

가.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(안 별표2. 2.)

- 1)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1차 조정 범위를 기본산정 기준의 “100분의 50”에서 “100분 100”으로 확대하여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%에서 100%로 상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중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. 2. 나. 중 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”를 “100분의 100의 범위에서”로 한다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2.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. (생략) 나.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(이하 "1차 조정"이라 한다)위반행위의 횟수,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<u>100분의 50의 범위에서</u>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. <u><신 설></u>	2.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100 분의 100의 범위에서----- ----- ----- 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952